

# 『현장수업연구』 투고규정

2019년 8월 제정

## 제1조(학술지의 특성 및 목적)

본 학술지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현장에서 교사, 강사, 교수 및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담당하는 각종 수업 및 강의에 관한 논문을 출판함으로써 가르침과 배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투고 내용)

- 2.1. 현장수업에 관한 논문: 초·중등교육의 수업 및 대학의 강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등에 관한 연구내용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이공계, 자연계, 인문사회, 예술체육, 농생명 분야, 환경생태, 융복합 분야 등 각 학문 분야와 교양교육에서 대학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사례 및 단행본을 해석하여 비평하는 내용도 실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산업체의 기업교육원, 평생교육원, 학원을 포함한 각종 교육현장에서 수업과 강의를 다룬 내용을 비롯하여 서당, 향교와 서원 등 전통 교육기관에서의 교학상장(敎學相長)에 관한 내용도 투고할 수 있다.
- 2.2. 수업 유형에 관한 연구 내용: 대학 교양강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의 전공강의를 다루는 사례를 비롯하여 사범대를 비롯한 교원 양성 기관에서 개설된 각종 수업(교직, 교과교육, 전공 강의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다. 또한 수업에 대한 내용, 양적 및 질적인 자료 분석을 혼합하는 연구와 예비교사의 수업 실천(수업지도안, 마이크로티칭, 과외/학원 수업 경험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수 있다. 산업체 현장을 비롯한 수업과 평생교육 강좌를 비롯하여 초등과 중등수업에 대한 내용, 영재수업 포함, STEAM 융합 수업, 자유학기제 수업, 일대일 멘토링, 각종 현장에서 진행되는 수업 등이 본 학술지의 투고 대상이 된다.
- 2.3. 수업연구에 관한 연구 방법: 수업/강의에 관한 실태조사, 각종 교수법(협동학습 활용 수업, 자기성찰학습 활용 수업 등), 사례연구, 실험연구, 자기연구, 자문화기술지, 자서전, 예술기반연구, 내러티브 탐구, 담화분석/대화분석, 수업비평, 내용분석, 비디오 연구, 파랑새 적용 질적 분석 사례, 근거이론, 현상학적 방법, 문화기술지, 온라인 강의, MOOC 강의, 수업 개선 관련 정책 연구 등 수업지도안/강의계획서 분석, CQI 보고서/티칭 포트폴리오 분석 등을 포함한다.

## 제3조(투고 규정)

- 3.1. 투고 내용은 타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 학술지와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으며, 연구내용의 전부 혹은 핵심이 이미 게재된 논문을 중복 투고할 수 없다.
- 3.2. 투고자는 매 호당 최대 2편까지만 투고할 수 있다.
- 3.3. 논문투고 마감은 발간일로부터 약 2개월 전(5월 10일, 11월 10일)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감일을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3.4. 투고 논문은 한글과 영문 중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 3.5. 투고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논문투고원본 파일(한글 원고일 경우 현장수업연구.hwp, 영문 원고일 경우 LSEF.doc)로 작성한 후, 논문 투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 3.6. 본 학회는 심사위원이 투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익명상태에서 논문을 심사한다. 따라서 투고

하는 원고에는 저자명이나 소속을 기재하지 않는다.

- 3.7. 본 학술지는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연구자가 수행한 사항을 투고 논문에 명시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 3.8.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수정본과 답변서를 제출한다. 만일 한 달 이내 수정본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탈락된 것으로 처리한다.
- 3.9. 본 학회지에 기존에 투고하여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된 논문은 제목과 내용의 전반적인 수정 없이 재투고할 수 없다.
- 3.10. 투고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및 원고의 오류로 인한 문제는 그 책임이 투고자에게 있다.

## 제4조(편집 규정)

- 4.1. 논문제목, 요약 및 주제어, 저자정보(최종 출판 시)는 국문과 영문을 모두 표기한다. 단, 영문 논문은 영문으로만 작성한다. 국문 요약은 200-250단어 분량으로 서문 앞에 쓰며, 8단어 이내의 주제어를 명기한다. 영문 abstract은 200-250단어의 분량으로 국문 요약과 내용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며, 원고의 맨 뒤에 첨부한다.
- 4.2. 편집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4.2.1. 용지는 A4 세로로 한다.
  - 4.2.2. 여백은 위 20mm, 머리말 15mm, 왼쪽 및 오른쪽 30mm, 제본 0mm, 꼬리말 15mm, 아래쪽 15mm로 한다.
  - 4.2.3. 제목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붙이며, 글자모양 및 정렬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I, II, III (신명조, 15pt, 장평 90, 볼드, 가운데 정렬)
    - 2단계: 1, 2, 3 (신명조, 12pt, 장평 90, 볼드, 왼쪽 정렬)
    - 3단계: 가, 나, 다 (신명조, 11pt, 장평 90, 볼드, 왼쪽 정렬, 들여쓰기 10pt)
    - 4단계: 1), 2), 3) (신명조, 11pt, 장평 90, 볼드, 왼쪽 정렬, 들여쓰기 20pt)
    - 5단계: 가), 나), 다) (신명조, 11pt, 장평 90, 볼드, 왼쪽 정렬, 들여쓰기 30pt)
    - 6단계: 번호없음. (신명조, 11pt, 장평 90, 볼드, 왼쪽 정렬, 들여쓰기 40pt)
  - 4.2.4. 요약 및 본문 내용은 신명조 10.5pt, 장평 90, 줄간격 170%, 들여쓰기 10pt로 한다.
  - 4.2.5. 기타 세부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투고 원본 파일(JFLS.hwp)을 참고한다.
- 4.3. 참고문헌 형식은 다음과 같다.
  - 4.3.1. 본문 내의 참고문헌의 인용
    - 저자가 1인부터 3인의 참고문헌 인용은 전영국과 최원호(2018) 또는 (전영국, 최원호, 2018), Wang, Lee, & Young(2014) 또는 (Wang, Lee, & Young, 2014)와 같이 표기한다.
    - 저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참고문헌 인용은 전영국 등(2018) 또는 (전영국 등, 2014), Wang et al.(2014) 또는 (Wang et al., 2014)와 같이 표기한다. “등” 대신 “외”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문서 전체에 일관적으로 표기한다.
  - 4.3.2. 참고문헌
    - 국내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책 또는 학위 논문의 경우에 제목을 진하게 표시한다. 그리고 학술논문의 경우에 논문제목, 논문집 이름(권 포함, 호수 제외)은 진하게 표시한다.
 

최원호, 전영국(2020). 비대면 온라인 수업 사례 고찰: 동영상 녹화 및 실시간 화상 수업 중심으로, **현장수업연구**, 1(2), 1-28.

김영희(2013). 현장 활동에 토대를 둔 대학 글쓰기 교육— 인터뷰와 참여관찰 등 질적 현장 연구 방법론을 응용하여. **교양교육연구**, 7(3), 483-540.

허희옥, 강의성, 소원호(2016). 컴퓨터교육 전공 수업에 적용된 학습성찰의 효과.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9(5), 11-25.

## 『현장수업연구』 발간규정

2019년 8월 제정

2022년 11월 수정

2025년 12월 수정

- 전영국(2019). **면담과 심층면담을 활용한 질적 연구의 수행**. 아카데미프레스.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강윤수 외 (역) (2005). *정성연구방법론과 사례 연구*. 서울: 교우사.
- 전북도민일보(2020).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대학의 어려움**. <http://www.domin.co.kr>. (2020. 6. 27. 검색)
- 영문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책이나 논문집 이름(권 포함, 호수 제외)은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 Macaro, E. (2015). English medium instruction: Time to start asking some difficult questions. *Modern English Teacher*, 24(2), 4-7.
- Danielson, C., & McGreal, T. L. (2000). *Teacher evaluation: To enhance professional practice*. Association for Supervision & Curriculum Development.
- Westbury, I., Hopmann, S., & Riquarts, K. (Eds.) (2000). *Teaching as a reflective practice: The German Didaktik tradi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itz, K. (2008). The self of the investigator in research with human beings. In B. Jegatheesan (Ed.), *Access, a zone of comprehension, and intrusion* (pp. 165-185). Bingley, UK: Emerald Publishing.
- Irwin, R. L. (2003, April). *Curating the aesthetics of curriculum/leadership and/or caring for how we perceive walking/guiding the course*. A paper presented at the Curriculum and Pedagogy Institute,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Alberta.
-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2008). *Biofuels*. Retrieved August 24, 2010, from [http://www.nrel.gov/learning/re\\_biofuels.html](http://www.nrel.gov/learning/re_biofuels.html).
- 4.4. 본문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고 하단에 각주 형식으로 첨가한다. 첫 페이지의 교신저자 정보나 연구비 수혜여부 등의 정보는 \*, \*\*, \*\*\*, ... 로 최종 출판 시 표기한다. 본문의 경우 1), 2), 3), ...로 표기한다.
- 4.5.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4.5.1. 표를 작성할 때, 한글워드프로세서의 표 만들기 기능을 이용하며, 가능한 한 표의 가로 선만 나타내게 작성한다.
- 4.5.2. 표의 윗선과 아랫선은 두꺼운 줄(0.4mm)로 하며, 두 줄 선은 사용하지 않는다.
- 4.5.3. 표, 그림은 본문의 적절한 곳에 배치한다.
- 4.5.4.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그림에는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예: <표 1>, [그림 1])
- 4.5.5. 표, 그림은 크기를 조정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선명하고 완벽해야 한다.
- 4.6. 논문 한 편의 분량은 투고원고 용지 20-3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 4.7. 본 투고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9)의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을 따른다.

##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교육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현장수업연구」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제2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하고, 교육과학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결정이 효력을 갖는다.

## 제3조 (발간 횟수와 시기)

- 3.1.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1월 31일, 7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 3.2. 특정 주제의 내용이 한 호에 집중될 경우, 최종 게재가 판정을 경우에도 다음 호로 발간이 연기될 수 있다.

## 제4조 (게재물의 성격)

본 학회지의 게재물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논문이나 이론적 논의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성격의 연구물이 게재될 수 있다. 학문영역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두지 않는다.

- 교육현장에서의 새로운 수업연구에 관한 이론 또는 사례를 소개하거나 기존의 수업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논문
- 수업내용에 관한 방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에 대한 탐색적 논문
- 여러 이공계, 인문사회, 예술체육 등 각 학문 분야와 학제 간 분야를 망라한 대학 강의 내용 및 사례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논문
- 각 학문영역(전공, 교양, 교직, 교과교육 분야 등)에서 수업 내용을 연구한 논문
- 수업연구에 관한 양적, 질적 및 혼합연구방법에 관한 연구 등

## 제5조 (발간 시 윤리규정)

- 5.1.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이나 일부이며, 학술지에 게재되는 시점이 학위논문 게재일(학위 수여일) 이후의 경우에는 발간 시 다음과 같이 반드시 사사표기를 해야 한다. 차후에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논문 투고자가 논문 철회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

야 한다.

- 5.1.1. 학위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거나 거의 대부분의 문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한다.
  - 본 논문은 ○○○의 20○○년도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 5.1.2. 학위논문의 연구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론적 배경과 결론 및 논의를 재구성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한다.
  - 본 논문은 ○○○의 20○○년도 석(박)사 학위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음.
- 5.2. 학술지에 발간되는 시점이 학위논문 게재일(학위 수여일) 이전의 경우에는 사사표기는 필요 없으나 학위논문 자체의 표절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의 연구 윤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 5.3. 투고논문이 연구용역 보고서 또는 현장연구 보고서의 축약이나 일부이며, 학술지에 게재되는 시점이 보고서 출판일 이후의 경우에는 발간 시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업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차후에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논문 투고자가 논문 철회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제6조 (편집위원회)

- 6.1.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지 편집 위원회를 둔다.
- 6.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국내외 편집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각 수업 연구 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6.3.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이전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발간 논문에 대해 논의한다. 발간 일정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온라인상의 편집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 6.4.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나, 재임이 가능하다.
- 6.5.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본 학회지의 편집 발간 규정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학회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 (게재료 및 저작권 양도)

- 7.1. 논문 분량은 편집 양식을 기준으로 하여 20매 내외로 한다. 게재료는 논문 편집본 20매 기준 25만원을 부과하고, 20매 초과 시 쪽당 1만원씩 부과한다. 학술연구비를 수령하여 작성된 논문은 기본 게재료, 초과 쪽 부담액 외에 별도로 10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 7.2. 학회지 별채본은 논문 게재 후 저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하며, 그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 7.3. 게재확정이 된 논문의 경우, 최종 수정본을 제출할 때,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양도 동의서는 이미지 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 『현장수업연구』 심사규정

2019년 8월 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교육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현장수업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과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심사 대상

심사 대상 논문은 『현장수업연구』 각 호의 원고 접수 마감일까지 투고된 논문에 한정한다. 단, 초청 논문의 경우에 원고 접수 마감일 이후에 투고되어도 무방하다.

### 제3조(심사 절차 및 판정)

- 3.1.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영역의 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단, 현장교사의 경우에 석사 학위 이상 전문가도 심사를 할 수 있다.
- 3.2. 논문 접수 후에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국에 보내야 한다.
- 3.3.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아래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다.
  - 3.3.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본 학회의 목적과 원고 작성양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1차 심사 대상 논문을 선정한다.
  - 3.3.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성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1차 심사를 의뢰한다.
  - 3.3.3. 각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논문심사표 양식에 따라서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평가한다.
    - 게재가: 오탈자, 간단한 문구 정도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로 저자 수정 후 게재되는 경우
    - 수정 후 게재가: 심사자 요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 수정하여 심사자 확인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게재되는 경우
    - 수정 후 재심사: 심사자 요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 수정하고 심사자가 재심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 게재 불가: 논문의 질이 매우 낮거나 수정 사항이 많아 해당 호에 게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3.3.4.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서 심사 결과를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 3.3.5. 1차 심사결과 수정 확인 후 게재 및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투고자는 논문 수정본과 수정항목 대조표 파일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3.3.6. 재심 판정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본에 대한 2차 심사를 의뢰한다. 2차 심사자는 지적 사항의 반영 여부 및 논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재가'('게재가'와 '수정 후 게재가' 포함)와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평가한다. 2차 심사 결과도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 제4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논문 현장성 및 학문 기여도: 연구주제나 내용이 교육현장을 반영하며 학문적 기여도가 높은가?
- 선행연구와의 연관성: 연구자의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
-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설계나 과정 등이 타당한가? 연구가 윤리적으로 수행되었는가?
- 결과 및 결론의 타당성: 논문의 논리 전개가 타당하고 도출된 결과 및 결론이 타당한가?
- 논문 형식의 적절성: 논문의 형식이 투고 규정에 맞고 인용 및 참고문헌의 형식이 적절한가?

### 제5조(이의 신청)

- 5.1.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문서로 제기할 수 있다.
- 5.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를 검토한 후,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심사료)

- 6.1.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단, 외국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의 경우, 심사료 대신 기타(예: 학회봉사예의 감사의 글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

##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교육과학연구소 윤리규정

2019년 9월 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교육과학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의 식을 확립하고, 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교육과학연구소에서 출판되는 학술지 「현장수업연구」에 적용한다.

### 제3조 (제정 및 심의)

이 규정은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교육과학연구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및 수정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윤리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윤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다.

###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다음과 같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게재 후 관련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삭제한다.

- 4.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4.2. “변조”라 함은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4.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 수행에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4.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시 연구부정 행위로 간주한다.
- 4.6.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제5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제보를 받은 논문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결정된 논문은 게재될 수 없으며,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삭제한다. 부정행위에 연관된 논문의 저자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에 향후 1년간 게재를 할 수 없다.

### 제6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 6.1.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6.2.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

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6.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6.4.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는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6.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7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7.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7.2. 조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윤리 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제9조 (진실성 검증 시책)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진실성 검증 원칙)

- 10.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10.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10.3. 연구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12조 (본조사)

- 12.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12.2. 조사위원회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12.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 (판정)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4조 (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14.1.** 본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제3조에 의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외에 연구윤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4.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나.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5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15.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15.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15.3.** 조사위원회는 연구소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16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7조 (조사결과의 보고)

**17.1.** 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7.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다.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라.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마.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바.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사. 제13조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17.3.**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를 보고받은 연구소장은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나.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다. 그 밖의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18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소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위원회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연구소장은 조사위원회의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회원 자격 박탈, 연구소 활동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 (연구대상자 보호)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상, 신체상 혹은 그 외 측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연구물에는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0조 (심사자의 의무)

논문심사자는 전문가로서 심사에 임할 때,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다양한 연구관점과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동료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21조 (중복게재 금지)

타 학술지(타 학회지 및 기타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제22조 (연구 윤리 준수 동의서)

**22.1.** 논문 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소정양식 1】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본 학술지 해당 호가 출판되기 전까지 편집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2.** 연구 윤리 준수 동의서는 저자 모두의 날인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를 교육과학연구소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3.** 동의서 접수 방법은 교신저자가 모든 저자의 서명을 받아 교육과학연구소 팩스 또는 이메일(서명한 동의서를 스캔한 파일에 한 함)을 통해 보낼 수 있다. 단, 모든 저자의 서명을 1장에 받지 않고 여러 장에 받아 보낼 수 있다.

## 제23조 (운영세칙)

**23.1.**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교육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23.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3.3.**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운영위원회의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